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5

제출년월일 : 2018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조례 제정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따른 시민 위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임

□ 주요내용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'동법' 용어를 '같은 법'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정목적을 명확화(안 제1조)

○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미만의 건축물 내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1항)

○ 개방화장실 지정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(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)

○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만 개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5항)

○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6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8. 6. 12. ~ 2018. 7. 2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4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붙임 1 >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) ①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것을 말한다.

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화장실(이하 "개방화장실"이라 한다)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개방화장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지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.

⑤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고,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1. 청소년의 음주, 폭력,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

안산시청 / 환경에너지교통국 환경정책과 / 신우현 / 2018-08-07 10:40

우려가 있는 경우

2.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,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,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3.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

⑥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

2.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

3.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강 상 봉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질보전팀장 박 옥 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신 우 현 (행정 2244)

[별지 제4호서식]

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	전화번호		
	주 소					
	건물 소유주와의 관계					
건축물 현황	건물명			층 수	지하: 층/지상: 층	
	주용도		연면적	㎡	준공일	
개방화장실현황	면 적	총면적: ㎡(남자: ㎡ /여자: ㎡)				
	개방화장실 층	층				
개방 시간	상시개방( ), 부분개방 ( )					
시설현황	변 기	변기수	소변기	개		
			대변기	총 개 (남자: 개/ 여자: 개/장애인용: 개)		
		대변기 유 형	동양식: 개, 서양식: 개			
	편의시설 설치내역	냉방시설( ), 난방시설( ), 에어(페이퍼)타올( ), 환풍시설( ), 변기종류인식장치( ) 사용중 인식장치( ) 기 타 ( ) ※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				

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서명 또는 인

안산시장 귀하

관련서류	화장실 소개서

화장실 소개서

1. 접근 용이성	
2. 관리체계성	
3. 평등복지측면	
4. 청 결 성	
5. 지정 필요성	

- 위 5개 항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관련사진(4″× 6″)

<u>화장실관련사진</u>

시설명		내용	

시설명		내용	

시설명		내용	

[별지 제5호서식]

제　　호

개방화장실 지정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개방화장실</td><td>건 물 명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 재 지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개방화장실 현　　황</td><td>건물연면적</td><td>㎡</td><td>층수</td><td></td></tr>
<tr><td>화장실면적</td><td colspan="3">㎡</td></tr>
<tr><td>개방시간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/table>

상기 건물을 시민을 위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안 산 시 장

〈 붙임 2 〉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1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	제11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) ①영 제8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것을 말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	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화장실(이하 "개방화장실"이라 한다)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	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	④ 개방화장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지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　　　행	개　정　안
	⑤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고,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1. 청소년의 음주, 폭력,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.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,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,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.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.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.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안산시청 / 환경에너지교통국 환경정책과 / 신우현 / 2015-08-0